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서식] <개정 2011.11.1> 정보공개시스템 (www.open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 정보공개(비공개) 결정 이의신청서
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처리기간 |
|---|---|---|

| | | |
|---|---|---|
| 이의 신청인 | 성명(법인 등 명칭 및 대표자) |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 등) |
| | 주소(소재지) | 전화번호(모사전송번호) |
| | | 전자우편주소 |

| | |
|---|---|
|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| |
| 통지서수령 유무 | [ ] 정보(공개・부분공개・비공개)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<br>[ ] 정보(공개・부분공개・비공개)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(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) |
|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| |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기관의 정보공개(비공개)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이의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**(접수기관)** 귀하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70g/㎡(재활용품)]